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 예방? 체감온도 확인과 물·그늘(바람)·휴식 3대 수칙 준수부터 시작합니다

-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단계별 조치사항 권고(관심-주의-경고-위험)
- 건설·물류·택배 등 폭염 취약업종 10만개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가 평년('91~'20)보다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하여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3대 기본 수칙, “물·그늘(바람)·휴식”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 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다음 쪽 참조)

【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권고사항) 】

관심(31도)	주의(33도)	경고(35도)	위험(38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그늘· 휴식 제공 · 냉방·환기 시설 점검 ·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시간 10분씩 휴식 · 무더위시간대 (14~17시) 옥외작업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시간 15분씩 휴식 · 무더위시간대 (14~17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시간 15분씩 휴식 · 무더위시간대 (14~17시) 긴급조치 등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10만 개소)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증상을 관찰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외국인·고령자 등 안전·보건 취약 계층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께서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2.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2-1. 온열질환 예방수칙 킷가이드(실내·외 용, 17개 언어)
 3.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4. 근로자 맞춤형 영향예보(기상청 제공)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신욱균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현건 (044-202-8891) 한진우 (044-202-8895)
담당 부서	기상청 예보국 영향예보지원팀	책임자	팀 장	정혜훈 (02-2181-0265)
		담당자	사무관	안용준 (02-2181-0268)



1. 배 경

-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
 - * (전체 온열질환, 질병청) '22년 1,564명(사망9) → '23.9.30. 2,818명(사망32)
(근로자 온열질환 산재승인) '22년 24명(사망4) → '23년 28명(사망1) * 2명 미신청, 1명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
-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
 - ILO는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 경고
- 이에 폭염이 시작되기 전 사업장의 자체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
 - 현장에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물류·유통업체 대상 온열작업 환경 실태조사('23년)* 및 노·사 간담회** 논의결과 등을 대책에 반영
 - * ▲물류: 방문조사(23.7~8, 쿠팡 등 5대 물류사 98개 사업장), ▲마트: 서면조사(23.8, 코스트코 등 4대 유통사 391개 사업장)
 - ** ①물류·유통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담회(4.29), ②건설업 및 제조업체 보건관리자 간담회(5.9)
③양대 노총 및 경총 관계자 간담회(5.13) 실시

2. 주요 추진내용

- ❖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대응
 - * ▲폭염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대책(5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8월)
- ❖ 예방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3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① 사업장 자체 폭염 예방대책 수립 지원

- (예방가이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외 체감온도 확인방법 등 정보* 제공
 - * (기준변경) 폭염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
(영향예보) 기상청 협의를 통해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지방관서 등에 제공
(체감온도)공단 홈페이지(또는 QR 코드)에 온도·습도 입력시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 구축

-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지원
 - * 미국의 열 질환 모니터링(OSHA 3743<증상 모니터링, 일정조정, 휴식 및 비상조치 등>) 방식을 국내 현실에 맞게 재구성

2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구축

- (폭염 취약사업장 DB구축) 신속·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지방관서별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 DB 구축·관리
 - * ①20억 이상 건설현장(20억 미만이라도 도로포장, 타설작업 등 폭염 취약 공종은 포함), ②물류센터 및 마트 등 취약업종, ③조선업·건물관리·택배업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 다수사업장, ④외국인(E9)을 고용한 농·축산업 사업장
- (신속한 상황전파) 폭염 영향예보 및 예방가이드 등을 '폭염 취약사업장의 정보전달 체계'에 따라 전파 및 이행 안내

<폭염 취약사업장의 정보전달 체계>



3 취약업종·직종 중심 기술 및 재정지원

- (안전공단) 온열환경 조성원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 * (대 상) 국소냉방장치, 환기시설 등의 개선 기술지원(유통업<200개소> 및 물류업<100개소>)
- (위탁기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및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등 기술지원
 - * (대 상)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미만 현장 등 10만여개소
- (재정지원)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자율신청 품목 지원(100억원)
 - * 폭염 취약사업장 지원 확대를 위해 건설업, 택배·운수업, 위생업종 등에 대한 배점 상향(10→ 20~30점)

4 사업장 자율점검 활성화 및 지도·감독 확대

- (자율점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DB) 대상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 안내(6.3~14, 2주간)
 - * 지방관서·공단 홈페이지에 예방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게시하고, 사업장에도 배포
- (지도·감독)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6.17~9.13)
 - ↳ 작업중지 및 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휴식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 적극 지도
 - (실외) ▲3대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여부, ▲취약시간(14~17시) 실외 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공사 중지·연장 제도 등 지도
 - (실내) ▲자체 예방대책의 적정성, ▲체감온도 관리 범위와 국소 냉방장치 및 환기시설 설치, ▲온·습도계 비치 및 휴식 부여 등 지도
- (합동점검) 외국인 고용사업장(농축산업 등) 대상,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검(8월경)

5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 (비상체계) 질환자 다수 발생 대비, 재난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체계 구축
 - * (주의·경계) 주의단계에서부터 본부 및 지방관서, 안전공단에 각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심각) 산재 예방을 위한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하는 「특별 대응기간」 운영(별도 시달)
- (위험상황 신고) 기관별 특별 신고전화 운영(☎1588-3088)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미이행 건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조치

6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본부) 폭염 취약업종 관련 협회·단체* 회원사 간담회 개최 및 건설현장 대상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실태 조사 및 사례 전파
 - (지방관서)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역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와 협업, 관련 사업장에 폭염상황 및 예방조치 등 전달
 - (공단)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동영상 (Shorts) 등으로 제작, 사회관계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 * 유튜브, 라디오, 안전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자 SNS, 배달·택배 등 모바일 앱, 산업안전전광판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각 사업장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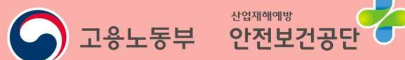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실내 작업장
<p>물</p> <p>☑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p>	<p>※ (적용범위) 실내에 전체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온도가 영향을 받는 장소</p> <p>물</p>
<p>그늘</p> <p>☑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p> <p>☑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p> <p>☑ 필요시 이동식에어컨 등 국소냉방장치 추가 설치</p>	<p>바람</p> <p>☑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아래 조치 이행</p> <p>1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p> <p>2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p> <p>*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p> <p>3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p>
<p>휴식</p> <p>☑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p> <p>☑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p> <p>1 근무시간대 조정 2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p> <p>3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4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p> <p>※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p>	<p>휴식</p>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가이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제공되는 권장사항으로, 기업 실정 및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이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추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통 사항 관심 주의 경고 위험 체감온도 31℃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p>온열질환 민감군이란?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고령자 ▲폭염 노출작업 신규배치자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이란?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 ▲(작업예시) 건설현장의 형틀·철근·콘크리트 타설·용접작업 등에서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 삼찰·망치질·톱질 등 공구 사용작업 등으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p>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경고 또는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위험 또는 폭염경보 체감온도 38℃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하기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체감온도는 폭염대책기간 내 상시 확인하고 전파합니다

체감온도는 습도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

실외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기후변화 → 폭염 영향예보(QR코드 활용)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확인 	체감온도 계산기 
실내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장소에 비치된 온·습도계로 체감온도 산출(QR코드 활용) 	

기상청 체감온도 표

기온(℃) 습도(%)	관심 주의 (주의보) 경고 (경보) 위험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0	26.6	27.6	28.5	29.5	30.4	31.4	32.4	33.3	34.3	35.3	36.2	37.2	38.2	
45	27.1	28.1	29.0	30.0	31.0	32.0	32.9	33.9	34.9	35.9	36.9	37.8	38.8	
50	27.6	28.6	29.5	30.5	31.5	32.5	33.5	34.5	35.4	36.4	37.4	38.4	39.4	
55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60	28.4	29.4	30.4	31.4	32.4	33.5	34.5	35.5	36.5	37.5	38.5	39.5	40.5	
65	28.9	29.9	30.9	31.9	32.9	33.9	34.9	35.9	36.9	38.0	39.0	40.0	41.0	
70	29.3	30.3	31.3	32.3	33.3	34.3	35.4	36.4	37.4	38.4	39.5	40.5	41.5	
75	29.7	30.7	31.7	32.7	33.7	34.8	35.8	36.8	37.8	38.9	39.9	40.9	42.0	
80	30.0	31.1	32.1	33.1	34.1	35.2	36.2	37.2	38.3	39.3	40.4	41.4	42.4	
85	30.4	31.4	32.5	33.5	34.5	35.6	36.6	37.7	38.7	39.7	40.8	41.8	42.9	
90	30.8	31.8	32.9	33.9	34.9	36.0	37.0	38.1	39.1	40.2	41.2	42.3	43.3	



후끈후끈.. 무더운 여름, 바람 솔솔~
시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요

물·그늘·휴식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원한 물
작업장소 주변 시원한 물 비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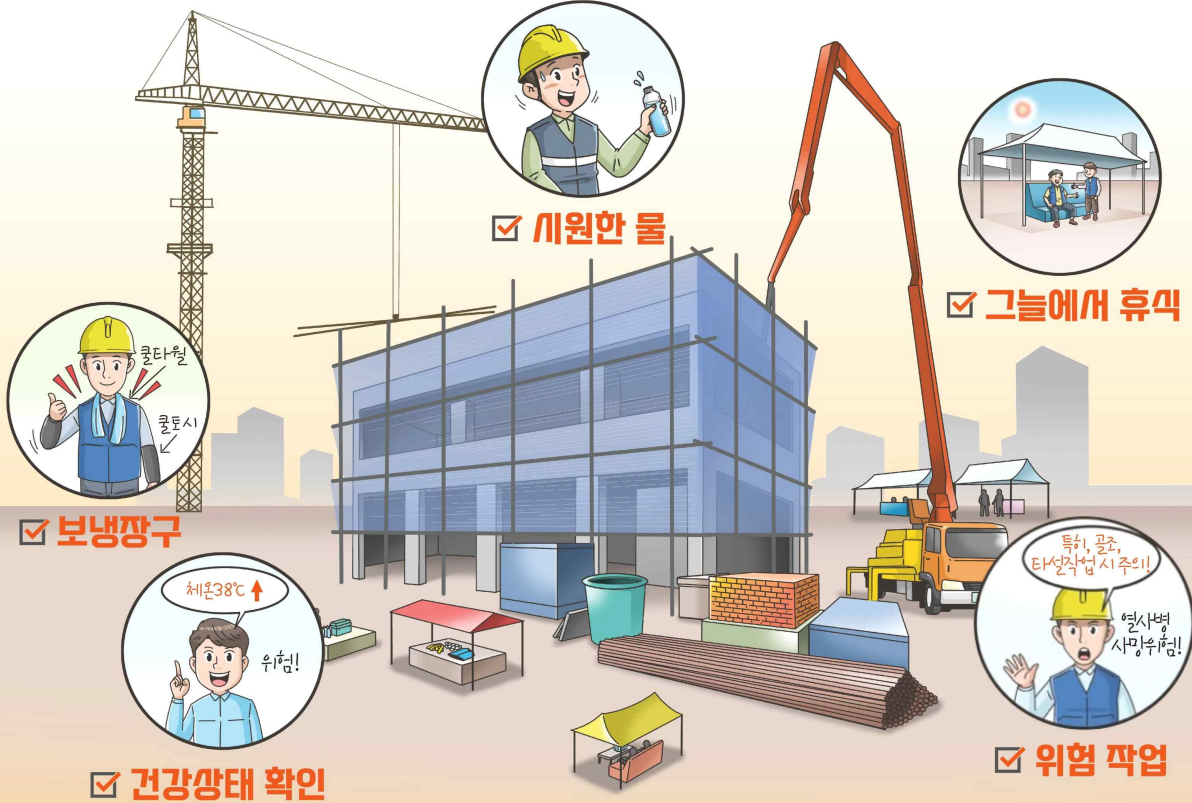


시원한 장소
그늘막 등 쉼수 있는 장소 제공

+



휴식시간
더운 시간대에는 업무량 조절 및 휴식



☑ 보냉장구
쿨타월, 쿨통시

☑ 시원한 물

☑ 그늘에서 휴식

☑ 건강상태 확인
체온 38°C ↑ 위험!

☑ 위험 작업
특히 골조, 타설작업시 주의!
열사병 사망 위험!

긴급한 경우 **119 구조요청** → **병원으로 후송** 하세요.

⊕ 온열질환자 발생 → 119 구조요청 → 구조대 도착할때까지 응급조치 → 후송

⊕ 긴급상황 발생 시 담당자 연락처: _____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통하여 [계열별 기후변화 자료실 →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후끈후끈.. 무더운 여름, 바람 솔솔~

시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요

물·바람·휴식

**관리온도
설정·유지**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고
유지되도록 노력

바람(환기)

주기적 환기 또는
국소냉방장치 설치

휴식시간

더운 시간대에는
업무량 조절 및 휴식

“체감온도는
주기적인 환기로
낮출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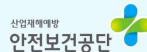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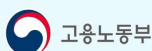
긴급한 경우 **119 구조요청** → **병원으로 후송** 하세요.

⊕ 온열질환자 발생 → 119 구조요청 → 구조대 도착할때까지 응급조치 → 후송

⊕ 긴급상황 발생 시 담당자 연락처: - -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통하여
[계절별 기후변화 자료실
→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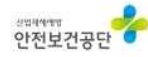


- ①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 ② 폭염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3대 기본수칙 준수 및 사고발생시 긴급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오
작업 환경	1. 더운 날씨 또는 직사광선 아래의 야외 작업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복사열과 같은 열원이 있는 더운 환경의 실내 작업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더운 실내·외 환경에서 수행되는 격렬한 신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전 준비	4. 체감온도 확인, 건강상태, 3대 기본수칙 이행, 비상시 응급조치 내용 등은 사전 점검을 수행하고 있나요. - 실내작업장은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수행하고 있나요. *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온열질환 위험 및 증상 관리, 3대 기본수칙 이행, 작업환경 개선 의견 개진 등을 실시할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였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TBM 등을 통해 폭염 노출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위험과 증상,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폭염 대응 조치	7.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체감온도를 수시 확인하고 있나요. * (실외)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확인. (실내) 안전공단 체감온도 산출시스템(QR 코드)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업무담당자는 폭염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작업강도, 보냉장구 착용여부 등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징후 및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 발열,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경련, 발한, 구역질, 피로감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3대 기본수칙 준수,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사고 발생시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있나요. *(실내) 국소냉방장치 점검 및 주기적 환기 조치, 보냉장구 지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작업중지가 가능한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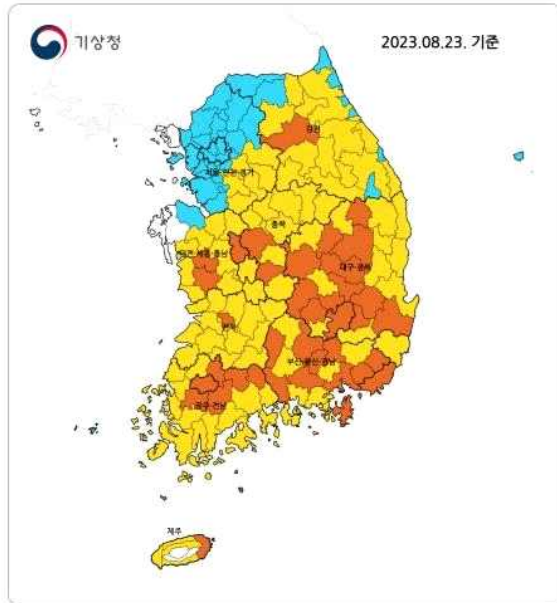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2023년 08월 22일 11시 30분 발표

폭염 영향예보 산업분야 위험 수준 분포도(2023.08.23. 기준)



위험수준	기준(일 최고 체감온도) / 대응요령
관심	31°C 이상 2일 이상 지속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및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 사전 확인 및 구분
주의 (폭염주의보)	33°C 이상 2일 이상 지속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매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경고 (폭염경보)	35°C 이상 2일 이상 지속 오후 2시~5시에는 가급적 옥외작업 중지, 작업 시에는 충분한 휴식(매시간마다 15분씩) 부여
위험 (폭염경보)	38°C 이상 1일 이상 지속 오후 2시~5시는 재난안전 긴급조치외 옥외작업 중지, 작업 시에는 충분한 휴식(매시간마다 15분씩) 부여

※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폭염단계별 대응요령

공통사항 (관심, 주의, 경고, 위험)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실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물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주의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 2일 이상 지속)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경고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 2일 이상 지속)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위험 (일 최고 체감온도 38°C 이상 1일 이상 지속)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 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하루 1회(전일 11:30), 특보구역(시·군 단위, 단 산지와 일부 도서지역은 별도 지정)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기상청(폭염 영향예보 산업분야 위험 수준 분포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폭염단계별 대응요령,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협업으로 생산·제공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11시 30분 발표

폭염 영향예보 산업분야 위험 수준 분포도(2023.08.23. 기준)



관심단계 발표지역

연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김포, 고양, 서울, 구리, 하남, 인천, 부천, 광명, 과천, 성남, 시흥, 안양, 의왕, 안산, 군포,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주의단계 발표지역

양평, 광주, 용인, 이천, 여주, 안성

경고단계 발표지역

없음

위험단계 발표지역

없음

폭염단계별 대응요령

공통사항 (관심, 주의, 경고, 위험)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실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도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주의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 2일 이상 지속)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경고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 2일 이상 지속)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위험 (일 최고 체감온도 38°C 이상 1일 이상 지속)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 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하루 1회(전일 11:30), 특보구역(시·군 단위, 단 산지와 일부 도서지역은 별도 지정)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기상청(폭염 영향예보 산업분야 위험 수준 분포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폭염단계별 대응요령,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요령) 협업으로 생산·제공합니다.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종류	온열질환 증상	응급조치 요령
열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40℃) -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 - 의식을 잃을 수 있음 (중추신경 이상) ※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 없이 119 신고 -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벗기거나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힘 -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 (대퇴부 밑, 가랑이 관절부)에 대어 체온을 낮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열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을 많이 흘림(≤40℃)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탈수 및 전해질 소실) - 창백함, 근육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원으로부터 벗어난 장소로 이동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필요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 보충
열경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육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 작업 시 사용된 근육이 쭉시거나 아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말고 근육부위 마사지 및 충분한 휴식 - 아래의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 ※ 1시간 넘게 경련 지속/기저질환이 심장질환인 경우 / 평상 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열실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지럼증 -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뇌허혈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에 눕힘 ※ 다리를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둠 -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함
열부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발이나 발목이 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에 눕힘 ※ 부종 발생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둠